

1. 개정이유

재활용기술 발전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방법을 추가하고, ‘껌’을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45호, 2024. 6. 4. 공포, 2024.7.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서식에서 ‘껌’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종이팩 재활용방법에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 제조를 추가하고, 고시로 정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정비(안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제6호, 제12호~제13호)
- 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 및 면제대상 확인서 서식에서 ‘껌’ 삭제(안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3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환경부령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 제조

별표 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속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금속원료를 제조

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할 것

다.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

별표 6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

별표 6 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

별표 6 제6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

별표 6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 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다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중 폐기물부담금 산출 명세 “② 수량(검제품은 판매액)”을 “② 수량”으로, “③ 폐기물부담금 금액(검제품은 효율)”을 “③ 폐기물부담금 금액”으로 하며, 같은 서식 작성요령 “②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의 수량을 적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이 검제품인 경우에는 그 제품의 판매액을 적습니다.”를 “②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의 수량을 적습니다.”로, “③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한 부담금 금액을 적되,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제품이 검제품인 경우에는 효율을 적습니다.”를 “③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한 부담금 금액을 적습니다.”로, “④ 부담금 납부금액은 대상 제품의 수량에 부담금 금액을 곱한 액수를 적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이 검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수량에 효율을 곱한 액수를 적습니다.”를 “④ 부담금 납부금액은 대상 제품의 수량에 부담금 금액을 곱한 액수를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명세 “② 출고·수입량(검의 경우 판매가액·수입가액)”을 “② 출고·수입량”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작성방법 “①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아래의 품목명

을 적되, 품목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품목명 : (살충제, 유독물제품), (부동액), (검), (1회용기저귀), (담배), (일반용플라스틱제품), (건축용플라스틱제품)”을 “①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품목명을 적되, 품목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